

대전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조선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정환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8. 4. 25. 접수 제27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피고 사이에 2018. 3. 30.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7,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77,300,000원은 C조합 융자금 승계로 처리, 잔금 40,000,000원은 2018. 4. 3.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147,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147,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위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별지 목 록

[토지]

1. 세종특별자치시

지목 : 과수원

면적 : 공유자 지분 1663분의 982

